취업브리지 사업단 운영규정

제정 2019.09.02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단(이하 '사업단'이라 한다)의 직무,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사업단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.

- 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공교육과정 기업 공동 개발 및 운영
- ② 현장실습 기업체 발굴・연계・컨설팅
- ③ 학생-현장실습 기업체 매칭 및 취업알선
- ④ 현장실습 중 현장실습 기업체 방문, 학생관리 및 평가
- ⑤ 구직활동 및 취업ㆍ진로상담 등
- ⑥ 그 밖의 사업단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

제2장 조직

제3조(조직) ① 사업단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단장을 두며, 임기는 1년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- ②단장은 사업단의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③학교 부서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취업브리지사업단장이 사업책임교수를 지정하며, 교과과정 운영과 개발에 필요한 교과과정담당 교수를 지정하여 운영한다.
- ④사업단은 취업 및 진로상담.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개별 공간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제4조(평가위원회) 취업브리지 사업 평가위원회(이하 '평가위원회'라 한다)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제3장 평가

제5조(평가) ① 취업브리지사업단은 다음의 각호와 같이 취업브리지 PDCA 구조에 맞춰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며, 평가위원회에 평가관련 자료를 공유하여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를 진행한 다.

② 평가위원회의 중간점검은 교과과정이 종료되는 시점에 운영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며, 최

- 종 평가는 현장실습 종료시점에 평가위원회를 개최 한다.
- ③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아래의 항목으로 진행 한다.
- 1. 중간점검
- 1) 사업비지출 현황
- 2) 전공교과과정 운영 및 이수율
- 3) 전공교과과정 만족도 조사 결과
- 4) 사업단의 계획 실행 여부 점검 등
- 2. 최종평가
- 1) 사업비 총 지출 현황
- 2) 취업브리지 현장실습 이수율
- 3) 취업브리지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
- 4) 취업브리지 사업 개선과 세부사업 지속여부 결정
- 5) 기타 평가항목이외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④사업단은 최종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, 차 년도 사업에 반영 한다.

제4장 재정

제6조(기타) ①사업단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- 1. 경기도 보조금 예산
- 2. 대학 자체 예산
- 3. 기타 찬조금
- ②회계에 관한 사항은 본교 및 경기도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.

제5장 기타

제7조(기타) 기타 사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9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.